

<2025 박문각 공인중개사 기본서 2차 부동산세법 정오표_1>

	수정 전	수정 후
P. 31 ㉠ 가산세	㉠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	㉠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
P. 45 넓혀보기	2. 과세표준과 ... 및 제5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	2. 과세표준과 ... 및 제56조 제1항 제2호의 2·제3호에 따른 ...
P. 56 4.	(2) 이의신청인은 신청 금액이 1천만원 ...	(2) 이의신청인은 신청 금액이 2천만원 ...
P. 60 ㉠ 전부 수정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국세기본법 제39조, 지방세기본법 제46조)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P. 64 (2)	㉠ 세무공무원이 ... (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	㉠ 세무공무원이 ... (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
P. 130 (5)	㉠ 차량초과로 ...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	㉠ 차량초과로 ...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
P. 152	(10) 재산세에는 분할납부(2개월 이내), ...	(10) 재산세에는 분할납부(3개월 이내), ...
P. 208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조문	3. 제4조 ... 제4항에 따라 ...	3. 제4조 ... 제5항에 따라 ...
P. 212 ㉠ 전부 수정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 ㉠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취득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된 것일 것 ㉠ 아파트(「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공 후 미분양주택 ㉠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 ㉠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P. 21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조문	① 1. 「지방세법」에 따라 ...,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	① 1. 「지방세법」에 따라 ..., 같은 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상한이 적용되는 ...

	② 1. 해당 연도의 ... 직전연도의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 제3항,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② 1. 해당 연도의 ... 직전연도의 「지방세법」(같은 법 제110조 제3항, 제111조 제3항 및 제112조 제1항 제2호는 제외한다)을
	② 2. 해당 연도의 ...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 제3항,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	② 2. 해당 연도의 ... 「지방세법」(같은 법 제110조 제3항, 제111조 제3항 및 제112조 제1항 제2호는 제외한다)
P. 222 6 (1) ① 전부 수정	①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제10조의2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한다)일 것	
P. 229 (6) ② 전부 수정	“주식 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소득세법 제88조 제2호).	
P. 254 넓혀 보기 2. 단서 신설	2. 소득세법 제100조 ... 불분명한 때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	
P. 265 (3) 적용배제	다만, ... 주택을 2025년 5월	다만, ... 주택을 2026년 5월
P. 267	② ①에서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	② ①에서 ...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 1주택
P. 273	(9) 다음 각 ... 주택을 2025년 5월	(9) 다음 각 ... 주택을 2026년 5월
P. 275 1.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제94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산이나
P. 283 ㉔ 전부 수정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 제2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P. 289 7.	(1) 과세표준신고서를 ...부터 90일 이내	(1) 과세표준신고서를 ...부터 3개월 이내
	2. 전부 수정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P. 297 3.	양도소득세의 ...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의 ...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P. 298 (2) ①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P. 302	㉔ 혼인으로 인한 ...: ...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㉔ 혼인으로 인한 ...: ...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P. 303	예제 ⑤ 5, 60, 60, 10	예제 ⑤ 10, 60, 60, 10
	해설 · 주택을 ... 날부터 (5)년 이내에 ... ① 1세대가 양도일 현재 ...	해설 · 주택을 ... 날부터 (10)년 이내에 ... ①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
P. 304	② 예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	② 예외: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
P. 310 예제 2.	③ 1주택을 ... 날부터 5년 이내에 ...	③ 1주택을 ... 날부터 10년 이내에 ...